

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
(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47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0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(안)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설치근거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

4. 2023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 개요

- 금천구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총 13개¹⁾를 관리하고 있으며,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개임.
- 2023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48,661,635천원임.
 - 2022년도 말 조성액 : 37,707,931천원
 - 융자금 미회수채권 : 10,953,704천원

1) 법정 의무 6개(자활, 양성평등, 통합재정안정화, 재난관리, 옥외광고발전, 식품진흥), 법정 재량 6개(노인 복지, 도로굴착, 중소기업육성, 남북교류협력,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,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), 구 자체 1개(청년미래)

5.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개별기금별 운용계획

기금명	2022년도말 조성액 ㉠	2023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3년도말 조성액 ㉡=㉠+㉢-㉣	증감 ㉤=㉡-㉠
		수입㉢	지출㉣		
합계	30,179,639	5,550,758	6,052,322	29,678,075	△501,564
남북교류협력기금	153,467	51,995	1,400	204,062	50,595
재난관리기금	5,108,616	1,109,176	670,392	5,547,400	438,784
통합재정안정화기금	17,779,596	497,829	0	18,277,425	497,829
중소기업육성기금	6,252,730	3,824,091	5,040,000	5,036,821	△1,215,909
식품진흥기금	885,230	67,667	340,530	612,367	△272,863

6.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

가.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2022년도 말 조성액 ㉠	2023년도 조성계획			2023년도 말 조성액 ㉡=㉠+㉢	비고
		수입㉢	지출㉣	증감 ㉣=㉢-㉣		
남북교류협력기금	153,467	51,995	1,400	50,595	204,062	

나.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2023년도 말 조성액 ㉠	융자금 미회수 채권 ㉡	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㉢	총 조성규모 ㉣=㉠+㉡-㉢
남북교류협력기금	204,062	0	0	204,062

다. 자금 운용 계획

○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 감
계	51,995	51,950	45
일반회계 전입금	50,000	50,000	0
이자수입	1,995	1,950	45

○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 감
계	1,400	1,800	△400
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	1,400	1,800	△400

6. 검토의견

-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설치 되었음

-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수입내역은

전입금 50,000천원, 이자수입 1,995천원

총 51,995천원이며,

지출내역은

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1,400천원임.

- 2023년도 기금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확보이며 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며, 향후 제반사업의 추진에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.

붙임 : 관련법령 1부. 끝.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3. 9.] [법률 제17564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

제24조의2(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·협력의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교류·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·협력을 증진하고, 관련 정책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8.]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기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

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
(제정) 2019.07.19 조례 제1033호

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구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북한의 재해·재난 및 기근·질병 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
2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3.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

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·운용한다.

②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(제1033호, 2019.7.19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